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2020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I. 감사 개요

- 수감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 감사기간: 2020. 11. 30. ~ 12. 4. / 5일간
- 감사인원: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철용, 황기영, 장기순 / 3명
- 감사범위: 이전 자체종합감사('18. 11. 16.)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II. 감사 결과

- 처분 요구 건수: 9건
 - 기관경고 1건, 기관주의 3건, 개선요구 3건, 통보 2건

III. 처분 요구 내역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시정 완료 (금액)	모범 사례 (인원)		
9	-	-	-	-	1	3	3	-	2	-	-	-	-

IV. 지적 및 처분 조치 내용(요약)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1	통보	<지적내용> ☐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유산 조사연구 개선 필요 ○ 국민신탁 시행계획에 보전재산 취득 대상 누락 - 시행계획에는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미포함 - 조사연구 시행 시 보전재산 취득에 관한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목록작성 지침 및 조사표 등 제시 필요, 사전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목록에 포함 할 필요 ○ 조사연구 고도화 및 DB 구축 필요 - 목록화 작업 시 국민신탁 차원에서 목록작성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별 조사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목록화 작업 조사표에 보전가치, 활용가능성 등의 항목 추가와 세부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함 - 조사연구 결과물을 DB화하여 보전재산 취득과 보전·관리·활용에 이용하고, 공개 가능한 DB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처분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 목록 포함, 조사연구 결과 DB를 취득 및 활용사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공개 가능한 DB 공개	
2	개선 요구	<지적내용> ☐ 여비규정 개정 필요 ○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나, - 국민신탁의 여비 기준표가 권익위 권고안보다 상향으로 지급 <처분내용>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여비규정을 개정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3	개선 요구	<지적내용> □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채용공고 시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격자 배수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하고 있지 않음 ○ 공고문에 외국어 및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우대사항이 있으나 점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가산점도 내부지침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절차(서약서 징구 등)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류전형 평가항목으로 경력사항을 30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 정량적 평가항목인데도 위원별로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 전형별 세부 평가기준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처분내용> ○ 계약직원 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개정	
4	개선 요구	<지적내용> □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체 세부규정 마련 필요 ○ 회계규정에서 자산관리에 관한 별도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까지 마련하지 않아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 관리 미흡 ○ 정관에 보전협약에 대한 체결기준, 조건, 이행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별도 규정이 없으며, - 2019년 남평주조장과 보전협약 이후 보전·관리·활용 등에 대한 실적이 없음 ○ 정관에 신탁자 등의 예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상훈 수여 등 세부 규정이 없음 <처분내용> ○ 자산관리, 보전협약, 신탁자 등의 예우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5 · 6	기관 경고 · 통보	<지적내용> □ 유물 구입 부적정 ○유물 구입 시 공개 공고, 유물 선정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이사장이 직접 대상 구입 유물을 선정하여 긴급 매입 ○최근 2년간 유물 구입처를 확인한 결과, 총 52건 82점, 304백만 원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 3개에서만 구입 ○유물 구입 가격 결정을 전문가 가격 평가 없이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만으로 가격 결정 - 여러 개 작품을 일괄로 구입 할 경우 합계 금액으로 견적처리 ○목적에 맞게 멸실 우려가 있는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물 위주로 구입하여야 하나, 2019년에 구입한 청산리대첩 캐리커처의 경우 2007년도 제작한 작품으로 유물 구입 기준이 없음 ○「유물 취득 규칙」을 2020. 11. 2. 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500만 원 이하의 유물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으나, 이는 유물 취득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저해 - 국민신탁에서 구입한 구입 유물(500만 원 이하)의 89.5% 차지 <처분내용> ○유물 구입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경고 처분(기관경고) ○유물 취득 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유물 구입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통보)	
7	기관 주의	<지적내용> □ 공사 및 용역 계약 부적정 ○자격요건이 없는 건축설계 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전시개편 및 시설 개보수 공사를 인테리어 등의 공사업체가 아닌 설계업체과 계약하여 준공함 ○설계도서가 있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 부적정 -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서가 있는 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 <처분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8	기관 주의	<지적내용> ☐ 선금 보험증서 미징구 부적정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선금 보험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나, - 선금 지급 13건(736,999천 원) / 선금 보험증서 미징구 13건 <처분내용>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 보험증서 징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9	기관 주의	<지적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 협상적격자 선정 부적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80점 만점 68점)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68점 이하 업체도 협상적격자로 선정 (낙찰자가 바뀌지는 않음)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미비 -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평가요소인데도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위원마다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 <처분내용>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리·감독 철저	